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수경력직의 민간경력직을 삽입하여 연가를 가산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정(안 제2조 별표1)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4)
-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삽입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안 제19조)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도록 규정

○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기타 미비사항 정비
-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도 표준안 자치행정과 - 11829(2010.7. 2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생략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별표3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생 략)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12.14)(2006.1.11 개정)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4.12.14)(2006.1.11개정)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2006.1.11개정)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2006.1.11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006.1.11개정)	<삭 제>
제16조(현업 공무원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06.1.11개정)	<삭 제>
<신 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06.1.11신설) <후단신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별표 3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0. 3. 22 개정)(2006.1.11개정)	<삭 제>

【별표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